

주한미군
부대 #15237
군우 96205-5237

주한미군
팜플렛 385-2

2012년 8월 7일

안 전

한국내 안전 운행 가이드

*본 규정은 2007년 5월 30일자 주한미군 팜플렛 385-2를 대체한다.

사령관을 대리하여:

BRIAN T. BISHOP
미 공군 소장
부참모장

주무관:



GARRIE BARNES
출판 처장

개요. 본 팜플렛은 한국에서 운전하는 주한미군 요원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변경 개요. 본질적인 변경이 있으므로, 전체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용. 본 팜플렛은 한국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미군 요원, 민간인 및 카투사 요원에게 적용된다.

보충. 주한미군 사령관, FKSF의 사전 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의 지휘 및 지역 양식 발행 그리고 본 팜플렛에 대한 보충은 금지된다.

양식. 주한미군 양식은 <http://www.usfk.mil/>에 있다.

기록 관리. 본 팜플렛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 작성된 기록은 미 육군 규정 25-400-2 에 의거하여 확인, 유지, 처분된다. 기록 제목 및 설명은 <https://www.arims.army.mil> 의 미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 (ARIM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 방안 제안. 본 팜플렛의 제안자는 주한미군 FKSF 이다. 사용자의 논평 및 개선 제안은 육군 양식 2028 (발간물 및 양식에 대한 개선 제안)을 사용하여 주한미군 FKSF, 군우 96205-5237 에 제출하도록 한다.

임시 변경. 본 팜플렛의 유효한 임시 변경은 안전 사무실에서 인증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이지 않다. 사용자는 대체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임시 변경 조항을 만기일에 파기한다.

배포. 전자 매체 한정 (EMO).

목차

제 1 장

개요, 1 쪽

- 1-1. 목적
- 1-2. 참고 문헌
- 1-3. 약어 해설

제 2 장

자동차 안전 검사, 1 쪽

제 3 장

운전 면허, 2쪽

제 4 장

주요 교통법규, 2 쪽

- 4-1. 교통신호 또는 지시
- 4-2. 차선
- 4-3. 통행의 우선 순위
- 4-4. 속도 제한
- 4-5. 앞지르기
- 4-6. 교차로 통행 방법
- 4-7. 차량 등화
- 4-8. 운전자 준수 사항
- 4-9. 주차
- 4-10. 승차 및 화물 제한

제 5 장

고속도로에서의 운행 방법, 15 쪽

- 5-1. 통행 방법
- 5-2. 고장시 조치요령
- 5-3.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준수 사항

제 6 장

교통사고, 16 쪽

- 6-1. 한국의 자동차 관련법
- 6-2. 사고 후 절차

제 7 장

군차량에 대한 추가 요건, 18 쪽

- 7-1. 차량 운행

목차 (계속)

- 7-2. 고속 도로 상태 부호
- 7-3. 주한미군의 정부공용 차량의 최대 속도 제한 (주한미군 규정 190-1에 근거)*
- 7-4. 교통 점수 제도 (별첨)

제 8 장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20 쪽

- 8-1.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 8-2. 자전거 안전 규칙

별지, 22 쪽

- A. 교통 안전 표지 일람표
- B. 도움 요청시 유용한 표현

표 목록

- 표 4-1. 운전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측정량의 대략적인 동등 수치, 9 쪽

그림 목록

- 그림 4-1. 교통신호등, 3 쪽
- 그림 4-2. 부적절한 차선변경의 예시 1, 4 쪽
- 그림 4-3. 부적절한 차선변경의 예시 2, 4 쪽
- 그림 4-4. 차선변경시 방향 지시등의 사용 (시내 주행시), 5 쪽
- 그림 4-5. 버스 전용 차로, 6 쪽
- 그림 4-6. 비보호 좌회전 신호, 6 쪽
- 그림 4-7. 차량 종류에 따라 지정된 차선의 예시, 7 쪽
- 그림 4-8. 통행 우선 순위 (하향하는 차량), 8 쪽
- 그림 4-9. 통행 우선 순위 (적재 차량), 8 쪽
- 그림 4-10. 충격의 속도 및 힘, 9 쪽
- 그림 4-11. 불법 앞지르기 유형, 10 쪽
- 그림 4-12. 진입금지 표지판, 10 쪽
- 그림 4-13. 횡단보도, 12 쪽
- 그림 5-1. 앞지르기사 방향 지시등의 사용 (고속도로 주행시), 15 쪽
- 그림 5-2. 차량 고장의 경고표시 위치, 15 쪽

용어 해설, 29 쪽

제 1 장 개요

1-1. 목적

본 팜플렛은 한국에서 운전하는 주한미군 요원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1-2. 참고 문헌

- 가. 주한미군 규정 201-1 (환경 관리 기준서)
- 나. 주한미군 규정 190-1 (자동차 교통 감독)
- 다. 한국 도로 교통법

1-3. 약어 해설

본 팜플렛에 사용되는 약어는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다.

제 2 장

자동차 안전 검사

모든 개인 소유 차량은 안전 검사를 거친다-

가. 개인차량은 등록전에 차량 배기가스 검사를 포함한 차량 안전 검사를 주한미군 규정 201-1, 2-3 항, g 에 의거하여 시행해야한다. 예외 차량 제외한, 개인차량은 재등록 할때 마다 검사를 해야한다. 이 규정에 부합하지않은경우, 필요한 정비를 마칠때까지 차량등록이나 디켈을 받을수 없다.

나. 개인 차량은 차량등록 전 30일 이내에, 미 육군 혹은, 미 공군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처음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마다 안전검사를 마쳐야 한다. 계약직, 제3국 직원, 혹은 그의 가족들은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검사와 배기가스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 차량 검사소는 대한민국과 본 규정의 주한미군의 검사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기계 적합성과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게된다. 차량은 등록 전에 차량 고장표시 장치 (삼각표시판과 섬광신호, 전기제 또는 불꽃신호)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불합격받은 차량은 수리할 항목이 적힌 불합격 통지서 를 받게되고 15 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각 지역사령관의 조치에 따라 추가 30 일을 받을수도 있다.

라. 개인차량 안전검사는 처음 안전검사를 마친 같은 달에 검사를 받을수있다. 차량검사 서류는 재등록을 위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외에는 항상 차와 함께 소지해야한다.

제 3 장 운전 면허

모든 주한미군 한미행정협정(SOFA) 구성원들은 다음을 행한다-

가. 영내와 영외에서 개인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요원(기술지원팀포함) 과 그의 가족들은 주한미군 운전면허 (USFK Form 134EK)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주한미군 운전면허를 발행받기 전에 미국 운전면허, 한국 운전면허 또는 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계약직 직원과 제3 국적의 직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주한미군 운전면허 (USFK Form 134EK)가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운전면허를 발행받기 전에 한국 운전면허 혹은 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규정190-1 참고)

나. 주한미군 운전면허 (USFK Form 134EK)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군인과 그의 가족들, 국방부 민간인 직원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기술지원팀과 그의 가족들은 - 5년.

(2) 계약직 (제3 국적의 직원 포함)과 그의 가족들은 -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까지 혹은 계약만료일 중 빠른날짜.

(3) 고용 운전기사 - 스폰서와 동일.

제 4 장 주요 교통 법규

4-1. 교통 신호 또는 지시

가. 운전자는 교통 신호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제차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 안전표지의 지시, 교통경찰관 및 그 보조자의 신호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신호기의 신호 또는 안전 표지의 지시와 교통경찰관 및 보조자의 신호, 지시가 다를 때에는 교통경찰관 및 보조자의 신호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교통신호기 및 신호기의 뜻.

(1) 적색 신호 (빨강색) -

(가) 제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나) 보행인이나 우선권이 있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

(2) 황색 신호 (노랑색) -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녹색 신호 (초록색)** - 직진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

“지시 표시가 없는 한 좌회전 할 수 없다.”

(4) **녹색 화살 표시의 신호**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차로 방향 통제 신호** - 차로 방향 통제신호가 거리 또는 도로의 각 차로상에 설치된 경우, 차량은 녹색신호가 표시된 차로에는 통행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가 표시된 차로 내로 진입 또는 통행할 수 없다.

(6) **가변 차선 신호** - 주요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중 체증 시간에 따라 교통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곳에 적색 X 표시 및 녹색 아래 방향 화살표 신호 장치가 사용된다. 이들 신호는 도로상의 차선표시/중앙선에 우선한다.

(가) 적색 X 표시 - 차량은 적색 X 신호가 켜진 차선을 이용하지 못한다.

(나) 녹색 아래 방향 화살표 - 차량은 아래 방향 녹색 화살표가 켜진 차선으로 갈 수 있다.

(7) **적색 점멸등 (정지 신호)**. 차량 운전자는 표시된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지하거나 교차로에 접근해 오는 차량이 보이는 교차로의 가까운 지점에 정지해야 한다. 차량 통행권은 정지 신호 지점에 정지한 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8) **황색 점멸등 (주의 신호)**. 차량 운전자는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차로 또는 신호를 통과해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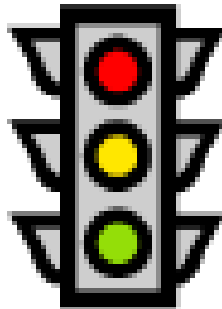


그림 4-1. 교통 신호등

4-2. 차선

가. 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선별, 차종별 통행구분에 따라 그 차선안에서 운행하며 그 차선분리선에 걸쳐서 운행하면 안된다.

나. 차선이 표시되어있는 도로에서의 잘못된 운행행위 예시:

- (1) 지정차로 위반행위.
- (2) 두개 차선에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



그림 4-2. 부적절한 차선변경의 예시 1

- (3) 두개 이상의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4)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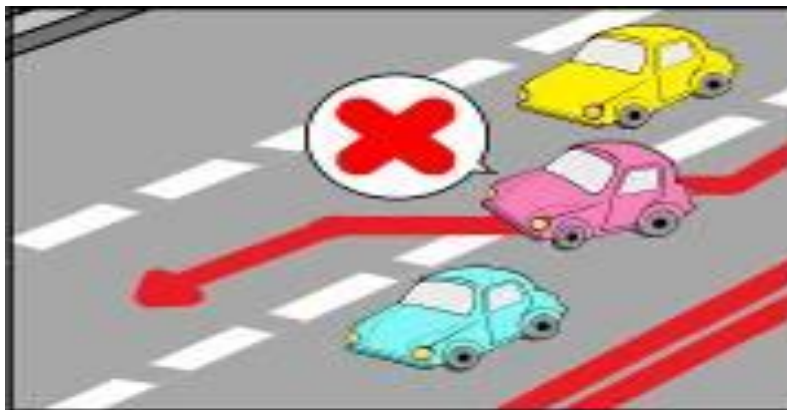


그림 4-3. 부적절한 차선변경의 예시 2

- (5) 끼어드는 행위.
- (6)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7)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황색점선 또는 실선은 중앙선이다. 차량은 실선을 넘을 수 없다. 황색실선과 점선이 모두 있는 경우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선을 넘어 추월할 수 있다. 백색 점선 또는 실선은 차선 분리선

이다. 차량은 진로변경이나 추월하기 위해 실선을 넘을 수 없다.

다.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

(1) 운전자는 진로변경 시 뒷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 (고속도로는 10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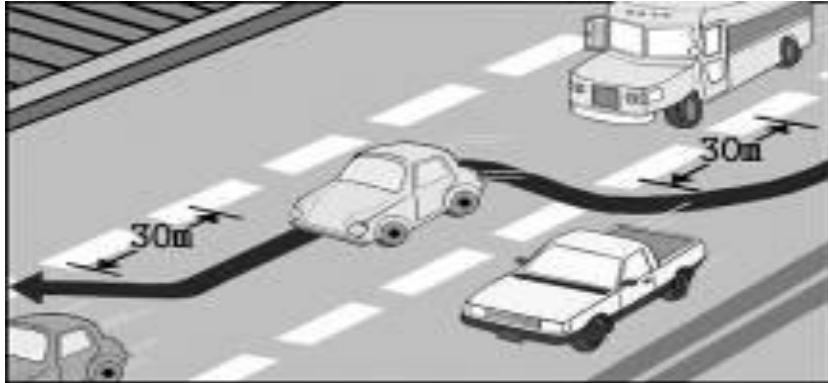


그림 4-4.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의 사용 (시내 주행시)

(2)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3) 진로 변경 금지 경우 -

(가) 운전자는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중인 뒷차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운전자는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70m 이내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버스 전용 차로:

(1) 시내 버스 전용 차로는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전용차선은 파란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만 주행할 수 있다. 통상 보조표지판에 버스이외의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적혀 있다. 교차로에서 버스 차선이 끊혀있거나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 버스 외 차량은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하여 우회전 혹은 통과후에는 즉시 주도로로 진입한다.

(2) 서울시내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도로의 가운데차로를 버스전용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고있으며, 버스 정류장 주변은 붉은색 아스콘 포장으로 일반차선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차량의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지정된 표지판이 공시된 교차로에서만 U턴을 할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는 시내교통과 달리 빠른 속도로 운행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3)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와 9인승 승합차 (최소 6인 이상 탑승시)만 사용할 수 있다. 청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4-5. 버스 전용 차로

마. 비보호 좌회전.

(1) 비보호 좌회전은 표지가 설치된 곳에 한에서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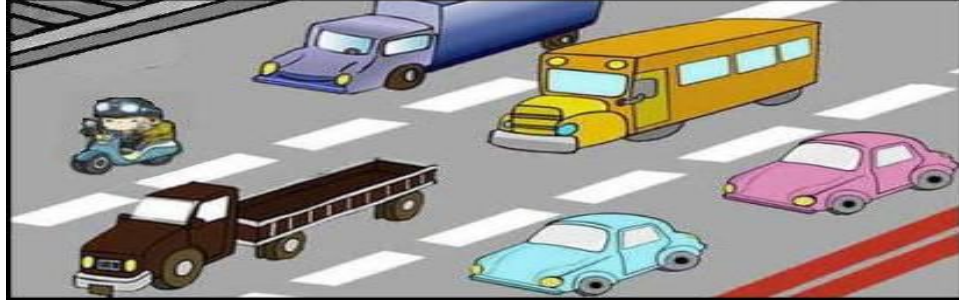
(2)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시 다른교통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그림 4-6. 비보호 좌회전 신호

바. 유턴: 특별히 허가되지 않으면 버스 중앙 차로에서 주행하거나 가로지를 수 없다. 중앙 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 고속도로 및 정해진 곳에서는 유턴이 금지 되어있다.

사. 차량은 해당 차종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하여야 한다. 아래도표는 편도 3차선의 예시이다.



편도 3 차선
(일방통행)

- | | |
|------|------------------------------------------------------|
| 1 차선 |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1.5t 이하의 유사 디자인 및 기능의 화물트럭 및 차량. |
| 2 차선 |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트럭, 트럭, 그리고 버스들. |
| 3 차선 | 이륜자동차, 자전거, 카트 및 견인차 그리고 혹은 그 밖의 다른 건설기계. |

그림 4-7. 차량 종류에 따라 지정된 차선

주의: 첫번째 차선(중앙선과 가장 가까운) 부터 우측으로 도로 경계선 방향으로 번호를 매긴다.

4-3. 통행의 우선 순위

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인가된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불거나 경광등을 켜고 접근해 올 때 (영내에서는 사이렌 또는 경광등 중 하나 켜 / 영외에서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모두 켜) 모든 차량은 가능한 도로의 좌/우측단으로(본인의 차선에 따라) 이동하여 통행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그 차량이 통과하기까지 정차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교차로상에 차를 멈추어서는 안되고 교차로를 벗어난 다음 도로의 좌/우측단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여야 한다. (영외에서는 인가된 긴급 차량이 상시 경광등을 키고 다님).

나. 우선권의 법칙은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통행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도덕적 및 법적 책임은 모든 운전자에게 있다. 운전자 상호의 예의와 협력은 사고방지와 명량한 운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 정지 및 양보표지 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1)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는 차량을 먼저 가게하여야 한다 (먼저차 법칙).

(2) 두 차량이 각각 다른 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에 접하였을 때는 오른쪽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차 법칙).

(3) 주행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는 서행하면서 정지할 준비를 하고 그차를 통과하게 하여야 한다.

라. 빠르게 주행하는 차에게는 양보하며, 자기 차량의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추월하려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방향으로 한열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뒷차가

추월하려고 할 때는 우측으로 주행하여야 한다. 서행하여야 하는 차량은 최단 우측차로 또는 표지로서 지시하는 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마. 도로 상황에 의한 통행 우선순위.

(1) 두대의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수 없는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는 내려가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올라가는 차는 도로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됨.



그림 4-8. 통행 우선 순위 (하향하는 차량)

(2) 좁은 도로 또는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는 승객이나 화물을 실은 차가 우선, 빈 차는 도로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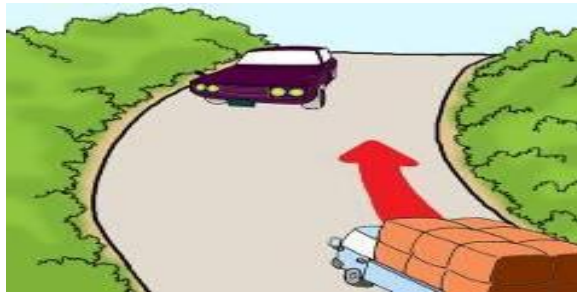


그림 4-9. 통행 우선 순위 (적재 차량)

4-4. 속도 제한

가. 본 항의 속도제한은 주한 미군의 업무용 차량 (군용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한 미군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은 제 7 장을 참조 할 것.) 법정 속도제한은 준수 되어야 한다. 흔히 속도제한은 교통표지로 표시됨으로 표지판의 속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상 기후시의 감속. 비, 눈이 내리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안개로 시야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20% ~ 50%로 감속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속도 및 힘 (그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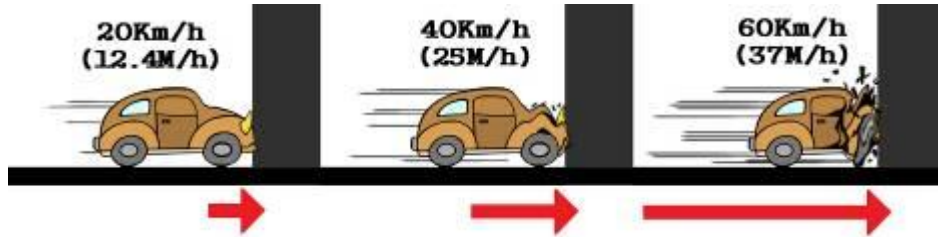


그림 4-10. 충돌의 속도 및 힘

나. 미터법. 대한민국에서는 미터법이 사용된다. 속도 제한 혹은 거리는 피트 혹은 마일 대신에 미터 또는 킬로미터로 나타내어진다. 빠른 암산방법시, 킬로에 0.6을 곱하면 대략적인 마일의 값 구할수 있으며 마일에 1.6을 곱할시 대략적인 킬로미터의 값을 구할 수 있다 (e.g., 40 km x .6 = 24 miles, or 30 miles x 1.6 = 48 킬로미터). 아래의 테이블은 운전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측정량의 대략적인 동등 수치이다.

표 4-1

운전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측정량의 대략적인 동등 수치

피트	미터	마일	킬로미터
1	0.3048	1	1.6093
10	3	10	16
15	4.6	15	24
100	30	19	30
200	61	25	40
300	91	31	50
400	122	37	60
500	152	43	70
		50	80
		55	88
		62	100
		68	110

4-5. 앞지르기

가. 앞지르기의 방법.

(1) 앞뒤에 있는 제차의 운전자들에게 앞지르고자 하는 의도를 미리 알려야 한다. (방향 지시용 신호작동).

(2)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앞차의 전방 및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앞뒤차의 속도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경음기를 울리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앞지르기 해서는 안되는 장소.

- (1) 급경사 위 혹은 그 근처.
- (2) 도로의 커브 모퉁이 부근.



그림 4-11. 불법 앞지르기 유형

- (3) 급경사로의 내리막.
- (4) 터널안.
- (5) 교차로.
- (6) 안전표지로 금지한 장소.



그림 4-12. 진입금지 표지판

4-6. 교차로 통행방법

가. 진입방법.

(1) 우회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단으로 서행하여야 한다.

(2)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3) 회전 또는 직진 등 하고자 하는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70M전부터 서행하여 해당 차로에 진입한다.

나.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통행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다.

(1)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있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다. 교차로 진입시 방금 신호가 바뀐후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입한다.

4-7. 차량 등화

가. 통행할 때의 등화.

(1) 제차가 야간에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 차폭등, 후미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야간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로 정의된다.)

(2) 안개, 기타 장애로 전방 100M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안개속을 통행할 때에는 하향전조등이 도움이 된다.

나. 전조등의 하향.

(1) 제차가 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하향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차가 야간에 서로 교행할 경우에 반대방향의 교통에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화의 광도를 감하든가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하여야 한다.

(3)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였을 때에는 주차등, 차폭등을 켜야 한다.

4-8. 운전자 준수 사항

가. 도로교통법, 표시된 제한속도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다. 제한속도와 버스전용차선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고, 이 표시에 따라 제한속도와 지정된 버스전용차선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혈액, 호흡검사, 혹은 소변검사에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는 주한미군 규정 190-1, 2-4, 에 따라 영내에서 모든 차량,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알콜이나 약물 검사를위한 혈액, 호흡 혹은 소변검사에 동의를 해야한다. 이 “암묵적인 동의”

에 거부하는 운전자는 1년 운전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다. 흙탕물이 튀지 않게 한다. 물이 끈 곳 등 흙탕물이 튀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흙탕물이 튀어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아동, 맹인등의 보호. 보호자 없이 아동이나 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림 4-13. 횡단보도

마.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또는 부근에 주, 정차한 차량이 있을 때는 감속하며 정지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영내에서는 통학 버스 및 셔틀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것을 점멸등 또는 육안을 통해 발견할 경우 해당 통학 및 셔틀 버스를 추월할 수 없다. 이는 정지된 버스가 있는곳의 양방향 차량에 모두 해당되며 모든 차량은 버스가 다시 떠날 때까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사. 운전석으로 부터 떠날 때. 운전자가 운전석으로 부터 떠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하여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음기의 사용금지. 특정 대도시에서는 경음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자. 약물 및 음주운전. 약물 또는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운전자나 승객을 막론하고 차내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1ml의 혈액당 0.5mg (0.05%) 이상이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은 면허취소이다.

차. 안전벨트의 사용.

(1) 정부소유차량, 공무에 이용되는 사유차량, 또는 연방기지에서 운용 되는 모든 차량의 사용자는 제작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모든 주한미군 및 군속은 영내외에서 사유차량을 운전하거나 또는 탑승할 때 항상 제작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3) 각 개인은 제작시 설치된 안전벨트 시스템이 제거되었거나 또는 작동할 수 없게 된 좌석에는 타지 않는다.

(4) 운전자는 앞뒤좌석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5) 자동차 운전자는 4 세 이하 또는 45 파운드 이하의 유아/어린이가 탑승할 때는 유아/아이용 적절한 보호장비(카시트) 없이 운행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나이 혹은 몸무게) 요구조건이 맞지않을 경우 유아/아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카. 주의 산만은 금지.

(1) 운전자는 운전에만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중 라디오 헤드폰이나 이어 플러그를 착용 청취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된다

(2) 운전중 개인휴대용 전자기기 (Mobile Personal Electronic Device (MPED) - 휴대전화, I-Phone, Balckberry, 피디에이 (PDA), 그외 문자나 이멜을 교환하기위한 비슷한 전자기기들을 포함한)의 사용은 영 내외에서 모두 금지되어 있다. 단,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혹은 핸즈프리를 이용한 휴대폰 사용은 허용된다. 이어폰 형태의 핸즈프리기구는 금지된다.

(3) 운전자는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 네비게이션과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차량에 장착된 휴대용 비디오 장치 및 휴대용 미디어 기기의 시청이 금지된다. 즉,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 기능 중 길찾기(Mapping system) 외의 다른 미디어 기능의 사용을 금지한다.

4-9. 주차

가. 불법 주차는 영내외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다. 모든 차량 등록자는 주차를 포함해서 차량의 적절한 사용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등록 차량에 계속되는 60 일 이내에 주차 위반으로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미 국방성 양식 1408) 2 번 이상 발부받은 사람은 시설 기지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 6 개월까지차량운행이 정지된다.

나. 주차금지 구역.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법 또는 법 집행 요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공공 교통 통제 장치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기 장소에 주차할수 없다.

(1) 보행로.

(2) 횡단보도.

(3) 차로 진입로 앞.

(4) 다리 또는 고가로 위.

(5) 터널 내부.

(6) 철로 또는 전차궤도 위.

(7) 통행이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

- (8) 언덕 정상에서 30m (100 피트)내의 도로 또는 언덕.
- (9) 연석 또는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 옆.
- (10) 공공 표시가 주차를 금지하는 곳, 지정주차장, 연석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경우 혹은 도로를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표시한 경우.
- (11)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또는 교차로에서 6m (20 피트) 이내.
- (12) 소방서 또는 유사한 비상 시설의 드라이브웨이에서 6m (20 피트) 이내, 소방서 또는 유사한 비상 시설의 출구 반대편 도로, 또는 출구에서 23m (75 피트) 이내.
- (13) 도로 측면에 위치한 점멸 신호등, 정지 표시, 양보 표시 또는 교통 통제 신호의 집입부 9m (30 피트) 이내.
- (14) 관계 당국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미 군사 시설내 잔디 또는 파종된 지역.
- (15) 사람의 탑승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 주차 또는 차량을 떠나는 행위. 항상 차량 반대쪽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막힘이 없는 간격을 두어야 하고 양방향 60m (200 피트) 거리에서 정차한 차량이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4-10. 승차 및 화물 제한

가. 승차인원의 제한. 운전자를 포함한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적재화물의 중량 및 용량초과.

- (1) 화물 자동차의 적재중량은 제조회사가 정한 그 자동차의 정량을 넘지말아야 한다.
- (2) 적재화물의 길이는 그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 (3) 적재화물의 넓이는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다. 적재제한을 초과한 화물에는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 (1) 주간에는 30cm X 50cm 이상의 빨간 직물의 표지를 화물의 가장 끝에 단다.
- (2) 야간에는 등화 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화물의 가장 끝에 달아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운행 방법

5-1. 통행 방법

가. 고속도로 진입할때의 우선 순위.

- (1) 긴급자동차가 우선.
- (2) 이미 통행하고 있는 차가 우선.

나. 앞지르기 방법.

(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과 경음기를 사용하여 좌측차선(앞지르기 차선)으로 안전하게 하여야 하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서 주행차선으로 곧 복귀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 방향 지시등 사용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때 방향지시등은 앞지르기선이나 주행선의 변경시 사용하며 앞지르기 선에 완전히 진입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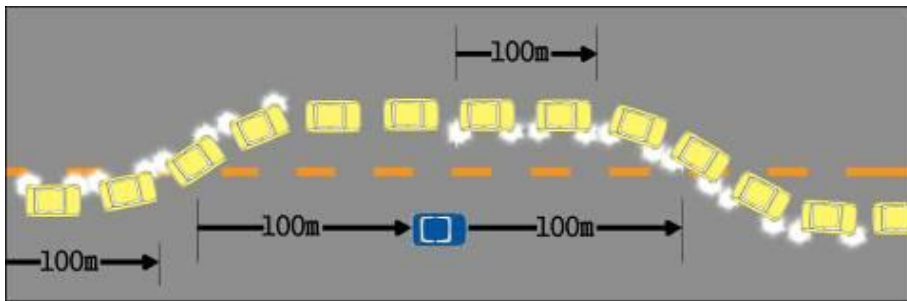


그림 5-1. 앞지르기사 방향 지시등의 사용 (고속도로 주행시)

5-2. 고장 났을 때의 조치요령

자동차가 고속도로 주행중 고장, 기타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 우측 (갓길)에 옮기고 고장차량의 100m 이상 (야간엔 2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표지 (삼각표지판)을 설치한다. 차량의 비상등을 작동함으로써 더 잘 보이게 한다. 비상등은 긴급사항 (도로 위 또는 근처의 사고, 고장 차량 등)을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상등은 500 미터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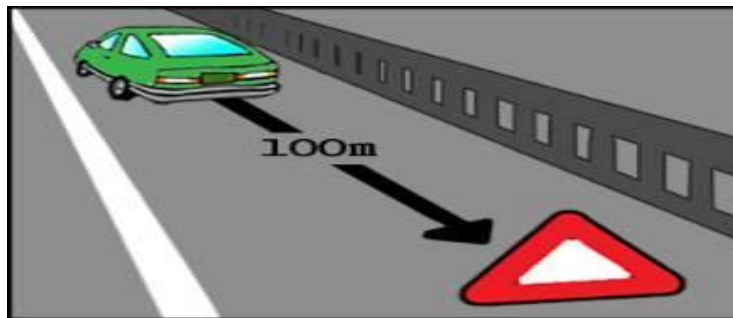


그림 5-2. 차량 고장의 경고표시 위치

5-3.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준수 사항

가. 운전자는 승객이 항상 설치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다.

나. 고장표시 장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반사성이 있는 고장차량 표지 (삼각표지판, 차량용 불꽃신호), 또는 회전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외: 연소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불꽃신호를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않된다).

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와 9인승 승합차 (최소 6인이상 탑승시)만 사용할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팜플렛 4-2, 라항을 참조한다.

라. 고속도로 갓길 운행을 하지말고 갓길은 비상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것임을 자각한다.

마. 터널 출입시 빛의 변화에 따른 시야확보를 위해 속도를 적절히 감속한다.

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10 MPH/16 KPH 운행시 차한대 정도의 거리를 둔다. (예: 30 MPH/48 KPH 운행시는 차 세대 정도의 거리유지) 3초 운행할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사. 별지 B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된 주요 의사전달 표시문이다. 주한미군과 군속이 한국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제 6 장 교통 사고

6-1. 한국의 자동차 관련법

가. 모든 주한미군 요원은 (주한 미군, 군속,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 - 한국 자동차 관련법을 따른다. 한국법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고도의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나. 형사상 책임.

(1) 한국 형법에는 모든 운전자는 전문운전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낸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사고후 현장에서 도주한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는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운전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할 때에는 피해자와 그 피해에 관한 합의를 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에 관한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 사망 사고.

(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부상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 (다) 신호위반이나 경찰관의 지시 위반.
- (라)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혹은 불법 후진.
- (마) 제한속도 20Km/h 이상 과속.
- (바) 위험 혹은 불법 앞지르기.
- (사)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자) 무면허 운전.
- (차)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 (카) 보도 침범 및 횡단보도 위반.
- (타) 승객 추락방지 승객 보호 의무 위반. (개문발차사고 등)

다. 민사상 책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인적피해와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물적피해가 발생되는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이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사합의는 (위 6-1나 에서 나열한 12가지 경우외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원만한 합의는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도 경감할수 있기때문에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밀접한 관련이있다. 운전자가 형사책임에서 면책되지않는 경우에도, 민사합의는 형사책임을 현저히 감면할수있다.

라.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보상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필수적이다.

6-2. 사고 후 절차

가. 운전자 책임사항:

- (1) 즉시 정차한다.
- (2)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3) 경찰관에게 다음사항을 신고한다. 현장에 경찰관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 지서, 파출소에 신고한다.
 - (가) 사고 발생 장소, 시간 및 날짜.
 - (나) 사상자 및 부상의 정도.
 - (다) 파손한 물건 및 파손의 정도.

(라) 기타 조치.

(4) 사고현장을 가능한한 사진으로 남겨 기록한다. 카메라를 휴대하는것이 좋다.

나. 경찰관은 사고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부상자의 구호.

(2) 교통의 위해 방지상 필요한 때에는 운전자를 현장에 대기 시킬 수 있다.

(3)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

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상당한 조치없이 도주 (뺑소니)한 때에는 엄중한 처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다

라. 언어소통의 문제가 생겼을때는 주한미군 FL 1EK (본부 주한미군 한미행정협정 카드) 를 보여주거나 별지 B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된 주요 의사전달 표시문) 를 이용한다.

제 7 장

군차량에 대한 추가 요건

7-1. 차량 운행

가. 도로 통과 간격. 도로 간격 또는 도로의 높이나 폭을 표시하는 표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심이 날 때에는 차를 일단 멈추고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육교밑이나 도로 또는 교량을 통과하여야 한다.

나. 매표소. 모든 군용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에 진입하거나 이로부터 나올 때에는 톨 부스(매표소)에 일단 멈추어야 한다.

다. 음식 및 담배. **군용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음식을 먹는다던지 음료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라. 차량운행시 부대내/외 도로에서 휴대용 헤드폰, 이어폰이나 그외 다른전자기기의 청취는 금지 되어 있다.

마. 휴대전화 사용: 주한미군 규정 190-1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에 의해 차량 운행시 손을 사용하는 휴대폰의 사용은 부대 내/외에서 금지되어있다. 차량안에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장착된 핸즈프리는 사용가능하다.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접근하는 비상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어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7-2. 도로 상태 부호

도로상의 노면상태 부호는 다음과 같다.

가. **녹색** - 노면상태가 정상으로 모든차량 운행 가능.

나. **황색** - 공무집행상 꼭 필요한 차량만 영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적색** - 긴급임무를 띤 차량만 영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허가. 긴급임무라 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
- (2) 긴급도로 보수 및 통신시설 보수.
- (3) 군 헌병 임무.
- (4) 수송통제 임무.

라. **흑색** - 도로 통과 불가능.

주의: 현재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는 <http://www.usfk.mil> 에서 얻을수 있다.

마. 고속도로 상황부호 및 시설 교통 부호. 고속도로 상황부호는 주보급로 및 보조보급로와 관련된다. 시설 교통 부호는 시설 안의 모든 도로망과 관련된다.

7-3. 주한미군의 정부공용 차량의 최대 속도제한. (주한 미군 규정 190-1에 근거)*

* 운전자는 도로 상태, 기후 조건, 사실상 잠재적 위험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안전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최고 속도 제한은 아래와 같으며 군용 차량 운전자들은 최고 속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마일/시간 (킬로미터/시간)

가. 행군부대를 지날 때--	10 (16)
나. 주한미군 영내에서--	
(1) 주거지역	15 (24)
(2) 학교지역	15 (24)
(3) 주차지역/차고지	5 (8)
(4) 영내 최고속도 (단 지역에따라 더 낮아질수 있음)	25 (40)
다. 일반도로 및 시내도로에서--	
(1) 인가 밀집지대내	35 (56)
(2) 인가 밀집지대외	40 (64)
(3) 학교지역	20 (32)
라.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1) 세단형 군용차. 고속도로 제한속도 표시에 따른다.	
(2) 전술차량--	40 (64)

(3) 기타 모든 군용차는 화물 차량이라고 고려되며 이 차량들의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50 마일/시속 80 킬로미터이다.

7-4. 교통 점수 제도 (별점)

가. 교통 점수 제도 (별점)은 전 주한미군 요원과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참조: 주한미군 규정 190-1, 별지 C.

나. 교통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육군규정 190-5/해군참모부 11200.5 다/미공군 규정 31-204/해병대 지침 5110.1 다/국방부 군수국 규정 5720.1 에서는 3 점 이상의 위반이라고 평가 정의됨) 운전특권은 즉시 판결전에 취소 또는 정지 될수 있다.

참조: 별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위반의 경중과 피해정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수 있다.

다. 운전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 (12 개월 연속기간 내에 교통 점수 12 점 또는 24 개월 연속기간 내에 18 점 누적 포함)는 공식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를 통보받는다. 교통 점수 누적에 의거한 운전특권 정지 또는 취소는 6 개월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각 부대의 고참 운전자는 운전특권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가 보충교육을 받았음을 증명 후에 운전자의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개인에게 부과된 점수는 누적을 위해 24 개월 연속기간 동안 또는 전역시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즉각적인 복무 연장, 부대 변경, 퇴역 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민간인으로서 한미 행정협정 등록이 지속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속 및 군인의 근무연장은 전역 또는 고용만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개인이 6 개월 이내에 6 점 이상의 교통별점을 받을경우, 운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시험장)

제 8 장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8-1. 이륜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공로에서 운전하고자 할때는 주한미군 규정 190-1, 2 장에 열거된 것과 같이 필히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나.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할 때는 항상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면 한국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주한미군 규정 190-1, 별지 B-19 오토바이 특별법 참조.

다. 이륜자동차는 한국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라. 엔진크기에 상관 없이 모든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지역 자동차등록사무실에 등록해야한다. 모든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항상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마.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보호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안전모 - 턱 아래까지 잠기는것으로 운수부 기준에 맞는것

(2) 보안경 - 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앞유리가 있더라도 잘게 부서지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강화유리, 혹은 얼굴을 다 가릴수 있는 보안경 (선글라스나 안전검열 표시 없는것은 적절치 않음).

(3) 장갑 - 손가락을 보호 할수있는 장갑

(4) 발목위 까지 올라오는 튼튼한 장화

(5) 긴 팔 셔츠와 긴 바지

(6) 눈에 잘띄는 상의착용을 권장한다. 반사체 조끼나 벨트는 이륜차 운행시 항상 입기를 권장하고, 야간에는 반사체 상의를 반드시 입을것을 권장한다. 상의는 항상 잘 보이게 하고 가방을 메었을 경우 가방위에 입어 가려지지 않게 한다.

주의: 만약 가방을 메었을때는 뒤의 운전자가 잘보이도록 가방위에 반사체 조끼를 입어야한다.

바. 레저용 이륜차는 엔진 크기에 상관없이 개인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로에서는 절대 운행할수 없다.




















사.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49cc 이하의 엔진을 가진 이륜 차량이다. 모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등록은 영내에서 하고, 번호판은 한국정부로 부터 발급받으며, 주한미군 디젤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로, 한국 번호판을 받기 위해선 모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유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2. 자전거 안전 규칙


























자전거를 탈때는 항상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낮에는 항상 눈에 잘띄는 상의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반사체가 상의를 착용한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를 타지말고 끌고 건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지 A
 교통 안전 표지 일람표

교통 안전 표지 일람표

WARNING SIGNS 주의 표지	101 Cross Intersection + 자형교차로 	101-1 T-Intersection T 자형교차로 	102-2 Y-Intersection Y 자형교차로 	101-3 Right Side Road ㄱ자형교차로 
101-4 Left Side Road ㄴ자형교차로 	102 Priority Road 우선도로 	103 Right Merge 우합류도로 	103-1 Left Merge 좌합류도로 	104 Traffic Circle 회전형교차로 
105 Railroad Crossing 철도건널목 	106 Right Curve 우로굽은도로 	106-1 Left Curve 좌로굽은도로 	107 Right Double Curve 우로이중굽은도로 	107-1 Left Double Curve 좌로이중굽은도로 
108 Two-way Traffic 2 방향통행 	109 Upgrade 오르막경사 	109-1 Downgrade 내리막경사 	110 Road Width Reduced 노폭감소 	110-1 Road Width Reduced-Right 우차선감소 

<p>110-2 Road Width Reduced-Left 좌차선감소</p> 	<p>111 Keep Right 우측방통행</p> 	<p>112 May Travel Either Lane 양측방통행</p> 	<p>113 Divided Road Begins 분리도로시작</p> 	<p>113-1 Divided Road Ends 분리도로끝</p> 
<p>114 Traffic Signal Ahead 신호기</p> 	<p>115 Slippery Road 미끄러운도로</p> 	<p>116 Wharf/ River Bank 강변도로</p> 	<p>117 Bumpy Road 노면요철</p> 	<p>117-1 Speed Bump Ahead 과속방지턱</p> 
<p>118 Falling Rocks 낙석도로</p> 	<p>119 Loose Gravel/Mud 돌, 흙탕물튀는도로</p> 	<p>120 Pedestrian Crossing 횡단보도</p> 	<p>121 Children Protection 어린이보호</p> 	<p>122 Bicyclist Ahead 자전거</p> 
<p>123 Road Under- construction 도로공사중</p> 	<p>124 Low-flying Aircraft 비행기</p> 	<p>125 Cross Wind 횡풍</p> 	<p>126 Tunnel Ahead 터널</p> 	<p>127 Wild Animal Protection 야생동물보호</p> 
<p>128 Danger 위험</p> 	<p>PROHIBITORY SIGNS 규제 표지</p>	<p>201 Road Closed 통행금지</p> 	<p>202 No Entry for Passenger Cars 승용자동차 통행금지</p> 	<p>203 No Entry for Cargo Vehicles 화물자동차 통행금지</p> 

<p>204 No Entry for Buses 승합자동차 통행금지</p> 	<p>205 No Entry for Motorcycles 2륜자동차 통행금지</p> 	<p>206 No Entry for Passenger Cars/Motorcycles 승용자동차, 2륜 자동차 통행금지</p> 	<p>206-1 No Tractors /Cultivators 트랙터및경운기 통행금지</p> 	<p>207 No Entry for Animal Drawn Vehicles 우마차통행금지</p> 
<p>208 No Entry for Hand Carts 손수레 통행금지</p> 	<p>209 No Entry for Bicycles 자전거 통행금지</p> 	<p>210 Do Not Enter 진입금지</p> 	<p>210-1 No Through Traffic 직진금지</p> 	<p>211 No Right Turn 우회전금지</p> 
<p>211-1 No Left Turn 좌회전금지</p> 	<p>212 No Crossing 횡단금지</p> 	<p>212-1 No U-Turn 횡단회전금지</p> 	<p>213 Do Not Pass 앞지르기금지</p> 	<p>214 No Parking or Stopping 주정차금지</p> 
<p>215 No Parking 주차금지</p> 	<p>216 Weight Limit 중량제한</p> 	<p>217 Height Limit 높이제한</p> 	<p>218 Width Limit 폭제한</p> 	<p>219 Distance Limit 차간거리제한</p> 
<p>220 Maximum Speed Limit 최고속도제한</p> 	<p>221 Minimum Speed Limit 최저속도제한</p> 	<p>223 Slow Down 서행</p> 	<p>224 Stop 일시정지</p> 	<p>225 Yield 양보</p> 

<p>226 Pedestrian Crossing Prohibited 보행자횡단금지</p> 	<p>226-1 No Pedestrian Walking 보행자보행금지</p> 	<p>227 No Entry for Vehicle Carrying Dangerous Material 위험물적재 차량통행금지</p> 	<p>MANDATORY SIGNS 지시 표지</p>	<p>301 Road Reserved for Motor vehicles 자동차 전용도로</p> 
<p>302 Road Reserved for Bicycles 자전거 전용도로</p> 	<p>302-1 For Bicycles And Pedestrian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p> 	<p>303 Traffic Circle 회전교차로</p> 	<p>304 Direction of Travel 직행</p> 	<p>305 Right Turn 우회전</p> 
<p>305-1 Left Turn 좌회전</p> 	<p>306 Straight or Right Turn 직행 및 우회전</p> 	<p>306-1 Straight or Left Turn 직행 및 좌회전</p> 	<p>307 Right or Left Turn 좌우회전</p> 	<p>308 U-Turn 횡단회전</p> 
<p>309 May Travel Either Direction 양측방통행</p> 	<p>310 Keep Right 우측면통행</p> 	<p>310-1 Keep Left 좌측면통행</p> 	<p>310-2 Proceeding Direction 진행방향별 통행구분</p> 	<p>310-3 Bypass 우회로</p> 
<p>312 Use Snow tires or Chains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사용</p> 	<p>313 Safety Zone 안전지대</p> 	<p>314 Parking Permitted 주차허용</p> 	<p>314-1 Parking for Bicycle 자전거 주차장</p> 	<p>315 Road Reserved for Pedestrians 보행자 전용도로</p> 

<p>316 Pedestrian Crossing 횡단보도</p> 	<p>317 Children Protection 아동 보호</p> 	<p>318 Bicycle Crossing 자전거 횡단도</p> 	<p>319 One-way Traffic 일방통행</p> 	<p>319-1 One-way Traffic 일방통행</p> 
<p>319-2 One-way Traffic 일방통행</p> 	<p>320 Unprotected Left Turn 비보호좌회전</p> 	<p>321 Regular Services Bus Only 버스전용차로</p> 	<p>322 HOV Lane 다인승차량 전용차로</p> 	<p>ROAD POSTING 노면 표시</p>
<p>Speed Limit (Children Protection)</p>  <p>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p>	<p>Slow 서행</p>  <p>서행</p>	<p>Exclusive Bus Lane 버스전용차로</p> 	<p>No U-turn 유턴금지</p> 	<p>No Parking 주차금지</p>  <p>주차금지</p>
<p>SUPPLEMEN TARY SIGNS 보조 표지</p>	<p>Towing zone 견인지역</p> 	<p>Cancellation 해제</p>  <p>해제</p>		

별지 B
운전자의 도움 요청

USEFUL SENTENCES

유용한 표현

(CHECK)

(체크)

KOREAN

한글

- | | | |
|-----------------------------------------------------------------|-----|----------------------------------|
| 1. Please help me. | () | 좀 도와주십시오. |
| 2. Please notify the military police of my accident. | () | 저의 사고를 헌병에게 알려 주십시오. |
| 3. Personnel have been injured and need medical aid. | () |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구급조치가 필요합니다. |
| 4. We need assistance from U.S. military personnel. | () | 미군 요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5. Which direction is ____? | () | ___ 이 어느방향입니까? |
| 6. Where is gasoline station? | () |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 7. We need water. | () | 물이 필요합니다. |
| 8. We need gasoline/diesel. | () | 휘발유/디젤이 필요합니다. |
| 9. Maintenance assistance is required. | () | 차량 정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 10. We have a minor maintenance problem but will leave soon. | () | 정비상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곧 떠나겠습니다. |
| 11. We need a tow truck from U.S. forces. | () | 미군 부대의 견인차가 필요합니다. |
| 12. Please help me call this number ____. | () | ___로 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13. Where is a telephone? | () | 전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
| 14. May I use your telephone? | () | 전화 좀 쓸 수 있겠습니까? |
| 15. How much do I owe you? | () |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 16. My name is ____ | () | 저의 이름은 ____ |
| 17. My car will not operate. | () | 저의 차가 고장 났습니다. |
| 18. May I park here? | () | 여기에 주차해도 되겠습니까? |
| 19. How can I contact you later?
Please write a note for me. | () | 제가 이 다음에 연락 할수 있도록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
| 20.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Gamsa Hammnida) | () |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용어 해설
약어

DOD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성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운수부
IAW	In accordance with	에 의거하여
MPED	Mobile Personal Electronic Device	개인휴대용 전자기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휴대 정보 단말기
POV	Private Owned Vehicle	개인 소유 차량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행정협정
U.S.	United States	미국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미 공군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주한미군